

[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제출서류 안내]

□ 제출서류 및 서류별 발급방법

구분	제출서류	발급방법
필수	① 참여신청서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구직활동계획서	신청화면에서 작성
	④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원 정보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⑤ 주민등록초본 (과거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	[온라인 발급] · 정부24(www.gov.kr) [오프라인 발급] ·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※ 초본은 신청화면에서 자동제출 가능
	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(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)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3개월분, 2021.4월~6월) ※ 직장가입자는 납부자 본인만 출력 가능	[온라인 발급] · 정부24(www.gov.kr) · 국민건강보험(www.nhis.or.kr) [팩스발급] ·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-1000 [오프라인 발급] · 주민센터 무인발급기
선택 (해당자)	①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※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	[온라인 발급] · 정부24(www.gov.kr) · 국민건강보험(www.nhis.or.kr) [팩스발급] ·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-1000 [오프라인 발급] · 주민센터 무인발급기
	③ 가족관계증명서 ※ 등본상 가구원과 자격확인서상 가구원이 다른 경우	[온라인 발급] 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efamily.scourt.go.kr) [오프라인 발급] · 주민센터 무인발급기

	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※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	참여중인 직접일자리사업 수행기관
	⑤ 경력증명서 ※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	각 기업 (회사직인 필수)
	⑥ 근로계약서 ※ 현재 주20시간 미만 근로중인 경우	각 기업 (회사직인/근로시간명시 필수)
	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	
	· 육아기 자녀(만8세이하)부양	· 별도 제출서류 없음
	· 여성가장	·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능력없음 증명 증빙서류(재학증명서, 복무확인 등) * 1인 가구 해당없음
	· 장애인	·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
	· 결혼이민자	· 국적취득자 :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· 국적미취득자 : 외국인등록증의 F2, F5, F6 비자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	· 한부모가족	· 한부모가족증명서
	· 북한이탈주민	·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※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